

의안번호	제 40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

발 의 자	오영탁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0년 4월 13일

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4월 13일
발의자 : 오영탁, 이수완, 윤남진,
김기창, 연종석, 김영주

1. 제안이유

석면의 피해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석면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·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관리지역 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)
- 사.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에 따른 시·군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협의 :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
- 라. 조례안예고 : 2020. 4. 6. ~ 2020. 4. 12.(의회 홈페이지)